2013년 7월 1일부터

새로운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적용

돼지 축종에 맞게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통합하여 단일등급체계인 1⁺, 1, 2, 등외등급(4개 등급)으로 적용됩니다.

개정내용

-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통합하여 단일등급체계로 개선
 - **(개정) 1⁺, 1, 2, 등외등급(4개 등급)**
- 등급판정방법의 일원화
 - 온도체 등급판정방법(전체), 냉도체 육질측정(희망자)은 항목별 측정결과만 제공
- 등외등급 상한 도체중량 범위 설정
 - 도체중량 탕박 110kg 이상·박피 100kg 이상 등외등급으로 적용
- 유통 규격을 감안하여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 범위 조정 및 도체중령, 등지방두께 범위는 행정에고 기간에 변경가능)
 - 1*등급 도체중량 하한 1kg 상향, 상한 2kg 하향, 등지방두께 하한 1mm 상향, 상한 2mm 하향 조정
 - 1*등급 도체중량: (현행) 83~95kg → (개선) 84~93kg,



정부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과 관련, 기존에 부처별로 관성화 된 정책 시스템을 개선, 부처 간 '융합정책을'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매월 주요 부처의 정책현안을 게재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. 이번 5월호에는 국토교통부의 '서면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' 관련 홍보자료입니다.

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



하우스푸어 지원

- 프리워크아웃 확대
- · 대상 : 연체우려, 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 대상
- · 금융권·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환기간 연장, 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 등 채무조정
- ☜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
- 대삼: 3개월 이상 연체차주
- '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
- ㆍ 차주동의 시 원금상환유예,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
-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
- ㆍ 대상 : 원리금 상환 어려운 정상 차주
- · 주택금용공사가 대출채권 매입하여 은행금리 수준 이자 납입
- ㆍ 최장 10년간 원금상환 유예
- 주택매각 희망자 :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
- · 주택을 리츠에 매각하고, 해당주택을 임차, 거주
- ㆍ 임대기간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 부여
- 새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,
 미매각 주택은 나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
- 주택연금 사천기업제도
- 주택연령 가입연령 낮춰(60세 → 50세)
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 인출, 부채상환



행복주택 공급

- · 철도부지, 유휴 국 · 공유지 등 공공보유 저렴한 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
- · 향후 5년간('13~' 17) 총20만호 공급(인허가 기준)
- ·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대학생 등 사회활동 왕성계층(60%), 주거취약 계층(20%) 우선공급
- 소득 등 적정 부담능력 고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

렌트푸어 지원

- 목돈 안드는 전세 1: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
- 집주인이 전세보충금을 주택담보대출, 세입자는 이자납부
- ・ 수도권 5천, 지방 3천 한도내 대출
- ·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,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억 (지방 2억) 대상
-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보증금 대출분에 각종 세제혜택
- 전세자금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
- 목돈 안드는 전세 [] : 임차보중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
- ·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
-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 인정하여 담보력 강화
-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

(W)

생애최초 구입자, 근로자 · 서민 기급지원

- ─■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
 - · 소득요건 완화 (부부합산 5.5천 ~ 6천만원) 금리안하 (3.8% ~ 3.3~3.5%)
 - DTI 자율적용(13년 한시)
 30년만기 신설
 - · LTV 완화 (60 →70%, ' 13년 한시)
- 저리 전세자금 대출 확대
- 소득요건(부부합산 4 → 4.5천만원),
 대출한도 상향(8천 → 수도권 1억, 지방 8천만)
- 지원금리 하향(3.7~ 3.5%)
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
- * 전세금 중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 허용
- 근로자 · 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
- 소득요건 완화 (부부합산 4천 → 4.5천만원)
- · 금리인하 (4.3 -> 4.0%)
- 추거안정구입자금 신설
- · LTV 70% 이상(85㎡ 이하이면서, 6억 이하인 주택) 또는 무주택자인 세입자 현 거주 임차주택(거주 1년이상) 매입시, 저리 구입자금(3.5%) 지원